

경상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소관기관 및 부서 :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

2.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4월 12일, 임병하 의원 외 12명

나. 회부일자 : 2024년 4월 1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

• 2024년 4월 24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3.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임병하 의원

나. 제안이유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지역서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고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와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지역서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지역서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5조제3항)
-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신설함(안 제6조제1항)
-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의2)

4.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김현주)

가. 개정의 필요성

- 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2년마다 발간하는 <2024 한국서점편람>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국내 서점 수는 2,484개로 지난 2022년 2,528개보다 44개(-1.74%) 감소하였음.
- 2000년대 온라인 서점의 등장과 통신판매 영향으로 급격하게 감소했던 오프라인 서점 수는 2014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함) 개정 이후 감소폭이 완화되었으나 전국의 많은 서점들이 여전히 매출 저하, 임대료 부담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서점이 없는 지역 총 10곳 중 경상북도의 경우 청송군, 봉화군, 울릉군 등 3곳이며 고령군, 성주군, 영양군, 의성군은 서점이 단 1개소만 있는 ‘서점 멸종 예정 지역’에 해당하는 만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사업 추진이 시급하여 「경상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이라 함)의 필요성이 인정됨.

《 경상북도 내 지역별 서점 수 현황(총 149개소) 》

2023. 12월 현재

시군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의성
서점 수	31	20	7	12	19	8	4	5	4	16	1
시군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
서점 수	-	1	2	2	1	1	6	4	-	5	-

※ (포함) 프랜차이즈서점, 대학 구내서점, (불포함) 어린이서점, 종교서점

나.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 개정안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의무를 부과한 법 제7조의2의 개정(2021년 8월 10일)사항을 반영하여 ①경상북도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있으며 ②중소기업자가 경영하는 ③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된 서점을 “지역서점”이라 정의함.

이는 ‘지역서점’의 법적 정의에 대한 전국적 표준을 준용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가 관계 법령과 동일한 용어체계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따라 지역서점의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지역서점의 요건을 다르게 정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없음
- 개정안 제3조는 「소상공인기본법」이 2020년 2월 4일 제정됨에 따라 종전 소상공인의 정의를 규정한 근거 법률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기본법」로 변경됨에 따른 조치임.
- 개정안 제5조는 경상북도지사가 경상북도 지역서점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실태조사는 일반적으로 현실적인 목표 설정, 효과적인 계획수립, 위험요소 파악, 이해관계자 참여 유도 기능이 있어 지역서점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특히, 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2024년 이후에는 2년마다 발간하는 한국서점편람을 발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서점의 실태조사는 더욱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서점 활성화 사업으로 ‘지역서점 실태조사’를 전수조사로 확대할 예정임

○ 개정안 제6조의 주요내용은 책값 돌려주기 등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설한 것임.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시책으로 울산광역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책값 돌려주기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민이 지역서점에서 구입한 책을 도서관에 기증할 경우 도서구입비의 일부를 지역민에게 돌려주는 사업으로 지역서점의 활용도를 높이고 독서문화 저변확대에 효과 있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음.

○ 개정안 제6조의2는 경상북도지사는 도서를 구입할 경우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 협동조합을 통하여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공공기관 및 시군의 도서관 등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한 사람에게는 책값 돌려주기 사업 등을 통해 사후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은 ①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②국고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③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④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에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라 지출 근거를 명시한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의견

-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법령 정비,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실태조사,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와 책값 돌려주기 사업 등 독서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집행기관은 면적이 넓어 서점과의 거리가 원거리인 지역이나 서점이 없는 시·군의 농어촌 학교가 지역 서점에서 소량의 도서를 구입할 경우 배송이 지연되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는 것을 고려하여 농어촌 학교 또는 지역민이 도서를 신속하게 구입할 수 있는 지역서점 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할 필요가 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